

입법예고

공중방역수 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1. 개정이유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계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 현행화를 위해 법령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추가(안 별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수 구분	근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 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가 족 수 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족방역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연 2회, 봉급액의 6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 (제4조관련)				[별표]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 (제4조관련)			
보수 구분	근무 기간			보수 구분	근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봉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족방역 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 하 지급			가족방역 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 하 지급		
<u><신설></u>				정근수당	<u>「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u>		
<u><신설></u>				정근수당 가산금	<u>「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u>		
<u><신설></u>				명절 휴가비	<u>「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연 2회, 봉급액의 60%)</u>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2